

수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51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515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5328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인경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권우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 피항소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혁

변론종결 2022. 9. 2.

판결선고 2023. 1. 2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53286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F 사이에 당진시 G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98㎡에 관하여 2018. 10.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F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 10. 1. 접수 제42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1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안희경, 판사 석윤민